회사를 통한 보유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개인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스위스 지주회사가 세계상 효율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추크에서 회사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 12%를 약간 밑도는 세율로 이익세를 납부합니다. 이어서 주주는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10% 이상의 적격 지분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30%, 추크에서 50%의 부분 경감이 적용됩니다.[1] 합산 부담은 개인 보유자의 세금 0을 넘어섭니다. 그럼에도 스위스 지주회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자의 활동이 그대로라면 직업적 거래로 분류될 경우입니다. 회사의 거래 이익은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배당 시기는 주주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재산과 분리하려는 경우, 또는 여러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용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지주회사는 스위스 거주자에게 스위스 지주회사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회사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단일 과세(one-tier) 제도에 따라 배당은 주주 단계에서 면세되며, 어느 단계에서도 부유세가 없습니다.[2] 회사를 통해 가문은 이사회, 회계 장부, 회사 명의의 수탁 관계, 그리고 키 대신 주식을 이전하여 물려줄 수 있는 비히클을 갖게 됩니다. 해외 원천 처분이익에 관한 Section 10L 규칙은 다국적 그룹 소속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해외 자회사가 없는 단일 가문의 싱가포르 지주회사는 그 적용 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상이 아닙니다.[3]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지배·관리되어야 하며, 가문의 경우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주자 이사가 최소 1명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회사 자체의 토큰 거래는 17%로 과세되는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질문

"저는 추크에 살고 있고, 2016년에 매입한 비트코인과 이더를 약 4,000만 스위스프랑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이혼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회사에 넣어야 할까요?"

스위스 회사를 이용하면 비과세인 개인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인 법인 이익과 과세 대상인 배당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세금만 놓고 보면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혼에 대비한 보호는 스위스 민법 제247조에 따라 별산제(Gütertrennung)를 채택하는 부부재산계약이 어떤 회사보다도 저렴하게 포지션을 보호합니다. 승계에 대해서는 키 관리 프로토콜을 갖춘 스위스 유언장, 그리고 자녀가 시간을 두고 자산을 받기를 원한다면 외국 신탁이나 리히텐슈타인의 가족재단이 회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회사가 정답인 경우는 적극적으로 거래할 계획이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공동 소유자로 참여시킬 계획인 경우뿐입니다.

주

1. DFTA, SR 642.11, 제20조 제1bis항(적격 지분에서 받은 배당의 70% 부분과세); Canton of Zug, Steuergesetz (BGS 632.1), § 19 제1bis항(50%). 제G편 제IV장 참조. ↩
2. Income Tax Act 1947, s. 44A(단일과세 제도: 배당은 주주 단계에서 면세) 및 s. 13(1)(za)(거주 회사가 지급한 배당의 면세). ↩
3. Income Tax Act 1947, s. 10L(1) 및 (2)('relevant group', 즉 둘 이상의 관할권에 법인을 둔 그룹 소속 법인에 대한 적용). 제M편 제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